긴 급 입 찰 사 유 서

□ 개요

○ 과 업 명 : 전기차 주행 특성 기반 탑승 편의성 분석을 위한 디지털트윈플랫폼 개발

○ 계약방법 : 제한경쟁입찰(협상에의한 계약)

○ 예 산 : 금300,000,000원(금삼억원)

○ 관련근거 : *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 제4항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 제4항 및 제6항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 제4항	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 제4항 및 제6항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 1.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**1의2.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** 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	**④ 제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** 1.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**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** 3.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**5.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** **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8조와 제14조에 따른 협상에의한 계약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**

□ 긴급입찰 사유

○ 본 용역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과업으로, 1단계에서는 실차시험 데이터 수집·관리체계 설계, Data Hub 및 디지털트윈 환경 구축 등 후속 과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, 이를 바탕으로 2단계 과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임.

○ 특히 1차년도 사업기간이 2026. 4. 1.부터 2026. 12. 31 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차시험 데이터 수집 및 디지털트윈 한경 구축 등 당해연도 예정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계약 체결을 통한 충분한 과업 수행기간 확보가 필요함.

○ 또한 용역 1단계에 편성된 예산의 적기 집행과 2027년도 2단계 과업의 연속적인 추진을 위해 신속한 용역 착수가 필요하므로 긴급입찰 추진이 불가피함.

☞ 긴급발주를 통해 **추진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**하고자 함.

2026. 10. 07.

(재)경북테크노파크원장 ㊞